

#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5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3. 7.

발의자 : 박정·이훈·신경민

윤후덕·노웅래·기동민

신창현·정춘숙·권칠승

원혜영·김병욱·김정우

박주민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기금의 계정 중 하나로 전세대부계정을 두어 군인의 주거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. 그런데 군인에 대하여 전세금 대부 외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, 전세대부계정도 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재원 및 용도도 이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전세대부계정의 명칭을 주거지원계정으로 변경하고, 전세금을 포함한 보증금의 대부·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주거 지원계정의 용도에 추가하여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한 군인의 주거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2·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35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복지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중 “전세대부계정으로”를 “주거지원계정으로”로 한다.

제4조의3의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세대부계정의”를 각각 “주거지원계정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다목 중 “민간주택전세”를 “민간주택전세금(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보증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전세대부계정의”를 “주거지원계정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세대부계정은”을 “주거지원계정은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군인복지기본법」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전적 지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2(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)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·학자금대부계정 및 <u>전세대부계정</u> 으로 구분한다.	제3조의2(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) ----- ----- <u>주거지원계정으로</u> -----.
제4조의3( <u>전세대부계정의</u> 재원과 용도) ① <u>전세대부계정의</u>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4조의3( <u>주거지원계정의</u> 재원과 용도) ① <u>주거지원계정의</u> ----- -----.
1. 「군인복지기본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수입금 가. · 나. (생 략) 다. <u>민간주택전세</u> 대부상환 지연이자	1. ----- ----- ----- 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<u>민간주택전세금(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보증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 -----
2. ~ 5. (생 략) 6. <u>전세대부계정의</u> 운용수익 ② <u>전세대부계정은</u>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	2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주거지원계정의</u> ----- ② <u>주거지원계정은</u>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「군인복지기본법」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전적 지원